

1. 개정이유

소방공무원의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건물의 구조, 용도와 자료조사 방법·절차 등 소방활동 자료조사를 할 목적으로 하는 소방기본법이 일부 개정(법률 제 21731호, '26. 6. 2. 개정, '26. 9. 3. 시행)됨에 따라, 법률에서 부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소방활동에 필요한 건물의 구조, 용도 등 소방활동 자료조사 항목을 신설함.(안 제7조의2 제1항 신설)

1. 소방대상물 및 관계지역의 위치·구조·용도 등에 관한 사항
2. 주변 도로 환경 및 건물의 출입구·피난시설 현황
3. 소방용수시설 현황
4. 소방시설 현황
5. 위험물 및 리튬이온전지 등 기타 연소물질 위치 및 적재 현황
6. 그 밖에 소방청장이 소방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나. 소방활동 자료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함.
(안 제7조의2 제2항 신설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관계기관 등과 협의 중(2026.6.3. ~ 6. 12.)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의2(소방활동 자료조사) ① 법 제16조 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소방대상물 및 관계지역의 위치·구조·용도 등에 관한 사항.
2. 주변 도로 환경 및 건물의 출입구·피난시설 현황.
3. 소방용수시설 현황.
4. 소방시설 현황.
5. 위험물 및 리튬이온전지 등 기타 연소물질 위치 및 적재 현황.
6. 그 밖에 소방청장이 소방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.

② 법제16조 제4항에서 자료조사의 방법·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6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7조의2(소방활동 자료조사) ①</u> <u>법 제16조 제3항에서 행정안전</u> <u>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</u> <u>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</u> <u>1. 소방대상물 및 관계지역의</u> <u>위치 · 구조 · 용도 등에 관한</u> <u>사항.</u> <u>2. 주변 도로 환경 및 건물의 출</u> <u>입구 · 피난시설 현황.</u> <u>3. 소방용수시설 현황.</u> <u>4. 소방시설 현황.</u> <u>5. 위험물 및 리튬이온전지 등</u> <u>기타 연소물질 위치 및 적재</u> <u>현황.</u> <u>6. 그 밖에 소방청장이 소방활</u> <u>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</u> <u>항.</u> <u>② 법제16조 제4항에서 자료조</u> <u>사의 방법·절차 등에 관하여 필</u> <u>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</u> <u>다.</u>